

# 노동조합규약



2022. 1. 11.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합의 명칭은 한국대학교 노동조합연맹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2조(소재)** 조합의 사무소는 연세대학교 본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복지증진을 꾀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2.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3. 직업안정 및 근로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4. 조합 조직의 정비 및 강화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교육 및 자기계발에 관한 사업
6. 연세대학교의 발전 및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사업
7. 기타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단체 가입)** 조합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합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 2 장 조 직

**제6조(구성)** 조합은 연세대학교(의료원 및 원주 제외)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제7조에 따라 가입 승인된 자로 구성한다.

**제7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합 탈퇴 후 재가입 신청 시 탈퇴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며 대의원대회에서 참석대의원(서면결의 시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탈퇴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3.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4.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다만, 제명 또는 해고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제9조(지부)** 본 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2. 조합의 규약, 결정 사항을 준수하고 조직의 통제에 따를 의무
3. 조합의 활동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
4. 조합의 운영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
5.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6.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2조(기구)** 조합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위원장단회
6. 선거관리위원회

### 제 1 절 총 회

**제13조(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4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2월월 중에 소집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 1,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성원 미달로 총회가 유회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재소집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회계감사, 운영위원 선출 및 부위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7.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8.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11.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2. 연합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3. 기타 조합의 중요한 사항

**제16조(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17조(대의원대회의 구성 및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각 선거구에서 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직능별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② 대의원대회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대의원대회 의장의 역할과 기능은 대의원대회 시 원활한 진행자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한다.

③ 대의원대회의 임원(부의장, 총무간사, 서기)을 3인 이내로 둔다.

④ 정기 대의원대회는 3월 중에, 임시 대의원대회는 위원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3분의 1,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의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제16조 총회 소집공고에 준한다. 다만, 임시 대의원대회는 최소한 3일 전에 공고한다.

**제19조(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는 총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제15조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선출과 제15조 제3호, 제7호, 제10호 및 11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어떠한 사유에도 조합원의 기존 권익과 근로조건에 저해가 수반되는 사항은 총회 기능을 대행할 수 없다.

**제20조(대의원 선출)** 대의원의 선출은 조합원이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그 세부사항은 본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1조(대의원의 임기 및 결원 보완)** ① 대의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하며,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신임 위원장이 취임할 경우, 대의원 선거를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차기 대의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결원 대의원의 보선은 당해 대의원 선출 선거구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에 인사발령으로 업무 직렬이 변경되거나 직급이 변경되더라도 잔여임기를 보장한다.

##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총15인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보선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3조(회의소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체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제24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2. 조합원 징계의 재심

3. 부, 차장의 해임 건의
4.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심의·의결
5. 조합운영에 관한 방침 수립
6. 특별부과금의 결정 및 특별예산, 결산의 승인
7. 사무국장 임명에 대한 인준
8.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부의 사항의 심의
9. 기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 제 4 절 집행위원회

**제25조(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각 국 국장 및 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6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2. 조합의 제반 업무 집행 및 운영대책 수립
3.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
4.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5. 단체교섭안 심의·작성
6. 각종 회의의 부의 안건 심의, 작성
7. 조합원 표창 및 징계 심의·의결
8. 선거관리위원 추천
9. 기타 조합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 제 5 절 기타 위원회 등

**제27조(위원장단 회의)** 조합의 활동상 필요한 각종 의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3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회계감사로 하여금 매학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회계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④ 회계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소집, 기능 및 임기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30조(자문위원회)** ① 조합의 운영 및 주요정책 등에 관한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은 역대 위원장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④ 자문위원회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 6 절 회 의

**제31조(성립 및 결의)**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진행)**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33조(특별결의)** 다음 각 호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34조(표결권의 특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 당해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1. 임원의 불신임
2. 징계

## 제 5 장 임원 및 부서

**제35조(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5명 이내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 3명 이내

### 제 1 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36조(임기와 전임자)**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재임기간중 노동조합 전임자(專任者)가 된다. 다만, 대의원대회 의결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7조(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날에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업무를 일체 통괄, 지휘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4. 각 국 국장 및 부장의 임명권자가 된다.
5. 부위원장을 추천한다.
6.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다.
7.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 쟁의 제기권을 갖는다.
8. 조직의 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 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10. 자문기구 및 특별기구로서의 위원회의 구성권을 갖는다.

11.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12. 본 조합의 규약 및 제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총회(대의원대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39조(부위원장의 임명)**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0조(부위원장의 임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정해진 순위에 따라)

## 제 2 절 사무국장

**제41조(임명 및 임기)** 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2조(사무국장의 임무)** 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각 국 및 부서의 장을 지휘한다.

② 조합 재산을 관리한다.

③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④ 업무 및 회계감사에 응한다.

⑤ 국장 및 부장의 임명을 제청한다.

## 제 3 절 부 서

**제43조(부서와 임무)** 조합의 각 부서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기획국은 산하에 기획부, 조직부 및 통계부를 두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

가. 노동조합 정책수립

나. 인사제도 개편

다. 각종 노조 규약 및 규정 제·개정(안) 작성

라. 조직구조 개편 사업

마. 각종 간담회 및 조직 강화 사업 추진

바. 대내외 자료 수집 및 분석

사. 조합원 가입 및 탈퇴 관리

아. 각종 회의 자료 초안 작성

2. 대외협력국은 산하에 대외부, 홍보부 및 전산부를 두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

가. 대내외 유관단체 협력활동

나. 조합원 경조사

다. 홈페이지 관리, SNS관리

라. 소식지 발행

마. 조합 홍보 활동

3. 문화복지국은 산하에 문화부, 복지부, 교육부를 두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

가. 조합문화 정착과 조합원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나. 노동조합 행사 관장

다. 조합원 유대관계 개선 사업

라. 조합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마. 직원 통합 및 처우개선 문제

바. 조합원 교육

사.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44조(국장)** 각 국에는 국장 1인을 두며 각 국 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5조(부장)** 각 국에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는 복수의 부장을 둘 수 있다.

**제46조(조합직원)** 조합의 직원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단회에서 협의를 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 6 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47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조합에 있으며, 위원장은 그 대표자가 된다.

② 단체교섭위원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교섭 및 체결권의 위임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8조(단체교섭안)** 단체교섭안은 집행위원회가 조합원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한다.

**제49조(단체협약의 작성)** 체결된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0조(노동쟁의)** ①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 달성을 위한 사용자와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노동쟁의를 선언할 수 있다.

②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1조(쟁의행위)** 쟁의행위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2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3조(쟁의대책위원회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
2. 정당방위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3. 집행위원회의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수행

## 제 7 장 상 별

**제54조(표창)** 조합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55조(징계)** 조합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르며, 징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합 또는 조합원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5. 정당한 조합업무 및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조합원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56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57조(재심)**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대의원대회에서 담당한다.

**제58조(임원의 불신임)** ① 임원이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불신임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시행규정)**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상벌규정에 따른다.

## 제 8 장 재 정

**제60조(재원)** 조합의 재원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61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일반회계는 조합비와 기부금으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특별기금과 특별부과금으로 한다.

**제62조(조합비)** 조합원은 매월 기본급(본봉)의 1%를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4조(회계규정)**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9 장 해 산

**제65조(해산)** ① 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산한다.

- ② 해산은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청산)**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해산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한다.

## 제 10 장 규약의 개정 및 시행규정

**제67조(규약 개정)** 규약 개정의 발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위원장의 발의
2. 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
3.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제68조(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규약이 위임한 시행규정과 그 외에 필요한 규정은 위원장 또는 관련 기구에서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제69조(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하고 통상관례에 준한다.

## 부 칙

1. (시행) 이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통과한 날(1991. 7. 3)로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시행) 이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1992. 6. 17)로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약도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1994. 12. 23)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단, 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997년 8월 31일까지 한다.
5. 본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1995. 12. 21)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1997. 9. 11)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1998. 2. 26)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개정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2001. 12. 27)로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2004. 11. 25)로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2005. 9. 29)로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2006. 9. 25)로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2006. 10. 11)로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2009. 12. 17)로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2010. 12. 28)로부터 시행한다.
15. 본 개정규약(제36조 제2항)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2013. 12. 12)로부터 시행한다.
16. 본 개정규약(제7조 제2항)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2015. 11. 17)로부터 시행한다.
17. 본 개정규약(제62조)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2016. 1. 11)로부터 시행한다.
18. 본 개정규약(제37조)은 총회에서 개정한 날(2016. 6. 23)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19. 본 개정규약(제3조, 제7조 2항, 제17조 1항, 제19조, 제22조 1항, 제25조, 제38조 4항, 제42조 1항과 5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2017. 9. 12)로부터 시행한다.
20. 본 개정규약(제21조 3항)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2018. 9. 12)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21. 본 개정규약(제21조 1항)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2019. 11. 27)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22. 본 개정규약(제22조 2항, 제28조 1항, 제36조 1항, 제41조 2항)은 제20대 노동조합 취임일(2021. 3. 1)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23. 본 개정규약(제14조 1항, 제17조 4항, 제28조 2항, 제62조)은 제20대 노동조합 취임일(2021. 3. 1.)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24. 본 개정 규약 제1조 조합 명칭 변경은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날(2022.1.11.)로부터, 제63조는 제20대 노동조합 취임일(2021.3.1.)로부터 개정 시행한다.